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정한 최상위 법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존립과 내용, 효력의 보장 등은 헌법에 근거하므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 재판이란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된 헌법 재판 기관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을 말한다. 헌법 재판은 입법부가 위헌(違憲)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으로써 고안된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 재판의 종류 중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결정의 선고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형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合憲)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구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재심 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 이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로 한정되는데, 이는 효력이 상실된 형벌 조항에 대한 재심 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헌인 모든 법률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하게 된다면 효력의 공백으로 인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 단순 합헌과 단순 위헌 외에 변형 결정을 내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란 변형 결정의 일종으로 해당 법률이 명백한 위헌이지만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부는 즉시 위헌인 법률 조항을 수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법률 조항을 즉시 실효시킴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한편 형식적으로는 존속시키고 이후 개선되도록 한다.

그런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에 대하여 적용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 등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국민들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대해 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중지시키면 합헌성이 있는 부분마저 적용이 중지되므로 기존에 조건에 부합하여 혜택을 받던 국민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하여 적용할 때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와 그렇지 아닐 때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상태가 오히려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이 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해당 법조문을 계속해서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차후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한다.

*소급: 거슬러 올라감.

*법익: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

1.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헌법 재판을 실행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 ② 헌법 재판 제도가 고안된 목적은 무엇인가?
- ③ 구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④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중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 조항에 대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2. 헌법불합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의 형태로 적용되겠군.
- ② ㉡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경우, 위헌성이 있는 부분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겠군.
- ③ ㉢는 ㉡와 달리 위헌적인 법률 조항의 개선 전까지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는군.
- ④ ㉢는 ㉡와 마찬가지로 대상 법률이 명확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지겠군.
- ⑤ ㉢는 ㉡와 마찬가지로 위헌 판결 시부터 개정 시한 전까지 대상 법률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낙태를 행한 혐의로 2012년 8월 24일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A는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에 행해지는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형법 제269조 1항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2021년 1월 1일까지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형법 제269조 1항은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조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일자 2012년 8월 23일이다.

- ① 형법 제 269조 1항의 효력은 판결 즉시 무효가 되겠군.
 ② 형법 제 269조 1항의 일부는 합헌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중지되겠군.
 ③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에 행해진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겠군.
 ④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의 위헌적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할 때 침해되는 법익이 그렇지 아닐 때 침해되는 법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겠군.
 ⑤ 형법 제269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A는 2019년 4월 12일부터 재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군.

4.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의사의 진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② 그 날 이후 차고 문이 굳게 내려졌다.
 ③ 그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④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⑤ 그는 최고의 군인에게 내려지는 훈장을 받았다.